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40-01

SOUTH AFRICA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340-01

SOUTH AFRICA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머 리 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과 점차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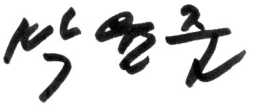

South Africa

Ⅰ. 국가 개황 • 1

1. 국가개요 ····· 3
2. 경제구조 특성 ····· 5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 12

Ⅱ.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 15

1. 투자법 개요 ····· 17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 18
3. 투자 인센티브 ····· 18
4. 각 주별 투자유치 ····· 19

South Africa

Ⅲ. 세제 및 세정동향 • 27

1. 개요 ····· 29
2. 개인 소득세 ····· 31
3. 법인세 ····· 35
4. 부가가치세 ····· 40
5.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CGT)) ····· 42
6. 특소세(Excise Duty) ····· 44
7. 상속세(Estate Duty) ····· 44
8. 비실명증권세(Uncertificated Securities Tax) ····· 44
9. 기술발전부담금(Skill Development Levy(SDL)) ····· 45
10. 퇴직기금세(Retirement Funds Tax(RFT)) ····· 45
11. 로열티(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 Royalties) ····· 45
12. 기타 ····· 46

Ⅰ. 국가 개황

1. 국가개요
2. 경제구조 특성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Ⅰ 국가개황

1. 국가개요[1)]

(1) 개관

○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수　　도 :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면　　적 : 1,219,090㎢(한반도의 5.5배, 남한면적의 12배)

○ 인　　구 : 49백만명(2009년 기준)
흑인(79.3%), 백인(9.0%), 혼혈인(9.0%), 아시아/인도(2.6%)

○ 국 경 일 : 4.27(Freedom Day, 1994.4.27 흑인정부수립 기념일)

○ 국 가 원 수 : Jacob Gedleyihlekisa Zuma 대통령

○ 정 부 형 태 :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 의　　회 :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 종　　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등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은데벨레, 코사, 줄루, 페디, 소토, 츠와나, 스와지, 벤다, 총가 총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G. D. P : US$ 2,877억(2009년)

1) 자료원 : 주한 남아공대사관

○ 1인당GDP : US$ 5,835(2009년)

○ 화 폐 단 위 : RAND($1=7.22Rand, 2010.8 현재)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OAU(아프리카단결기구), NAM(비동맹), 영연방,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

(2) 지형

○ 아프리카대륙의 최남단(남위 220-350, 동경 170-330)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을 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 천혜의 자원부국

○ 고원지대로 된 좁은 해안대로 구성, 고원 동쪽으로 Drakensberg 산맥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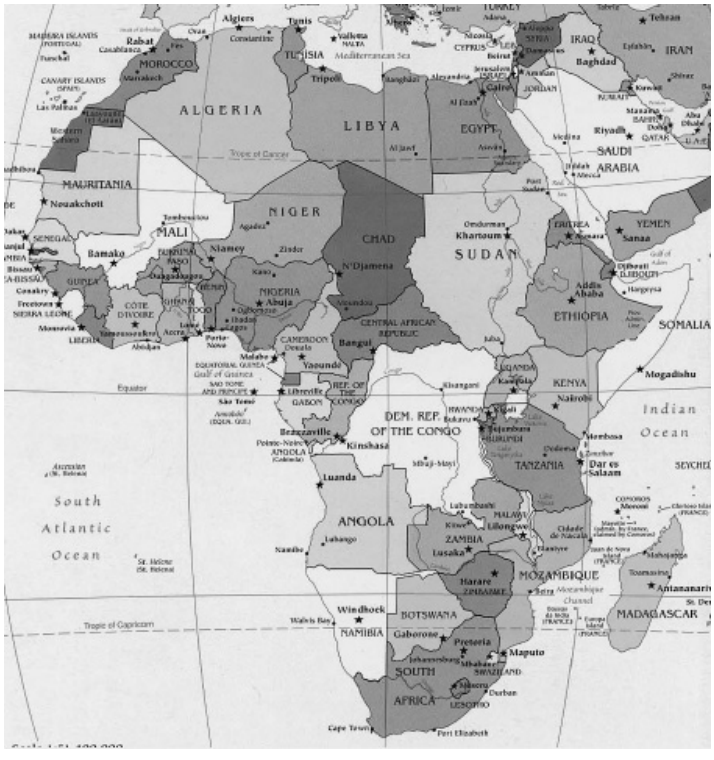

[아프리카 지도]

(3) 기후

○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다습

○ 1년은 크게 여름(11월-3월)과 겨울(6월-9월)로 나눠지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

○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서 강우량이 극히 소량

2. 경제구조 특성[2)]

(1) 거시경제

○ 지난 1999년 이후 장기 성장국면에 진입한 남아공 경제는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요인에 힘입어 2007년까지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함

○ 2004년 경제는 4.8% 성장했으며, 2005년에도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확대, 산업생산량 증가 등 요인이 지속되어 5.6% 성장해 지난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3%대로 하락

○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월드컵 개최로 인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남아공 경제성장률]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5.6	5.5	3.7	−1.8

* 자료출처 : IMF

2) 자료출처 :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2) 경제정책

○ 흑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GEAR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

○ 흑인들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비율의 지분을 흑인들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을 추진

* 흑인경제활성화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BEE)

- BEE제도는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서 흑인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일정 기준의 기업 및 공공기관은 흑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지분을 소유토록 하고 있으며, 흑인 기업 제품 구입을 장려하는 제도임
- 남아공 투자기업 중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하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흑인경제육성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함.
- 남아공 정부는 심사 및 입찰과정에서 흑인경제육성정책 이행도를 평가하며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금융지원, 세금혜택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남아공 경제의 주요 당면 문제는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 National Congress)내 권력교체에 따른 갈등 및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58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보균자 등 국민건강 문제, 세계 최고수준의 범죄율, 세계경제 침체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적기 대응 지연, 高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기능인력 부족 및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임

(3) 교역구조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20% 점유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 철합금, 석탄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무선송신 기기 등임

○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이며, 최근 아프리카 국가 특히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

- 2009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일본(11.1%), 최대 수입국은 독일(11.2%)

(4) 통상·투자환경

□ 수입정책상의 장벽

① 관세장벽

- 과거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였음
-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
- 1995년 약 15%에 달하던 기준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현재 5% 수준까지 인하되었고, 2005년 기준 농산물 수입액의 34.2%, 비농산물 수입액의 69.3%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0%로 인하되었으며 2012년25.0%까지 인하될 예정

② 수입규제

-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 자료출처 :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05년)

③ 통관절차상 장벽

-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invoice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

④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음
- 최근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5. 5월부터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 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상존
-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생산업체의 '과세대상자 확인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남아공에서 만든 섬유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표기 의무화

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

- 2004년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
-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 삽입을 의무화
-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
-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⑥ 품목별 장벽

-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
-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MIDP)” 시행
-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시 관세혜택

⑦ 지적재산권 보호

-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적재산권 수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
-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남아공 내 미국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35%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19백만불에 달함
- 최근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
- 모조품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원 확충, 모조품 수거를 위한 창고 확대, 세관원/국경경찰 등에 대한 교육 강화

⑧ 서비스장벽

- 통신시장은 Telkom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비용이 매우 높음
- 2005.12월 제2통신사업자(Neotel)가 선정되어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Telkom의 견제가 심한 상황

□ 투자 장벽

①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흑인경제활성화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은 남아공 기업에 기업별 흑인지분 할당, 흑인종업원 할당, 흑인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입 등을 권장하고 있어 해외투자자의 지분소유 제한 및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②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
-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을 통한 투자 진출의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 승인 필요

③ 외환관리

-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
-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
-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 가능

④ 과실송금 보장제도

-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음. 다만,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
-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

- 외국 자회사의 본사로 이익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송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사전 허가절차가 필요
- 경영기술 관련 비용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

⑤ 경쟁정책

-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시장에는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
- 에너지, 교통, 통신시장은 여전히 독점시장으로 존재

(5)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 풍부한 광물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석유가스 연관 산업과 원자력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망간, 크롬, 백금, 바다듐, 질석 등 희귀 금속 매장량 세계 1위
- 풍부한 석탄(생산량 세계 5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과 석탄으로부터 액화석유 추출하는 기술(CTL 및 GTL) 보유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중소형 원자로개발사업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추진 중

○ 광업(mining)은 GDP의 5%로 40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음

○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 수출의 90% 차지

- 금광산업은 GDP의 3%, 수출의 15%, 20만명 고용효과

○ 에너지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25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수요로 인해 에너지 집약(energy-intensive) 경제구조 보유

- 적은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에 비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 전기생산 비용은 낮은 수준
- 석유 생산은 주로 석탄으로부터 액화 추출에 의존

[남아공 주요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종 류	단 위	남아공(A)	세계(B)	A/B (%)	세계순위
안티몬	천톤	44	1,800	2.4	6
크롬	백만톤	100	810	12.3	2
형석	백만톤	41	230	17.8	1
금	톤	6,000	42,000	14.3	1
망간	천톤	32,000	380,000	8.4	3
백금족	톤	63,000	71,000	88.7	1
티타늄	천톤	71,300	1,380,000	5.2	4
바나듐	천톤	3,000	13,000	23.1	3
지르콘	백만톤	14	38	36.8	1

※ 자료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3. 한국과의 주요 관계[3)]

(1) 교역 개요

○ 1992.12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

○ 1997년은 30억달러에 달하였으나, 이후 약 15억달러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5년 이후 20억달러를 초과, 2008년에는 교역액 35억달러 기록

○ 수출입 현황

3) 자료출처 :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한국-남아공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530	959	1,319	1,794	1,753	1,397	1082
수 입	782	999	1,094	1,385	1,766	2,159	1,171
계	1,312	1,958	2,413	3,179	3,519	3,556	2,253

* 자료출처 : KOTIS

○ 2009년은 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전년 대비 36.6% 감소하였음

○ 2010년 한국 경제 침체 회복 및 남아공 월드컵 개최 등으로 교역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2) 투자 동향

○ 투자동향

- 연도별 직접투자액(신고기준)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직접투자액	196	123	26,697	5,983	29,397	21,942	94	168,939

*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투자기업명	건 수	금 액
Samsung Electronics(삼성전자)	6	48,857
LG Electronics(LG전자)	4	42,407
Innoland Property(이노랜드건설)	1	20,305
Daewoo Motors(대우차)	4	18,255
Malesela Taihan Electronic Cable(대한전선)	2	14,100
Poschrome(포스코)	2	10,050
Sinna Manufacturing	4	2,845
SJM Flex	3	2,249
Daewoo AMIC	2	2,327
ONSE Telecom(온세통신)	7	1,500
Ceragem	3	1,810

* 자료출처 : 수출입은행

○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제62위 투자대상국(비중 0.16%)

○ 대부분 수출 및 수입을 위주로 하는 판매법인의 형태로 투자

○ 제조업 투자는 대한전선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M-TEC)가 유일

Ⅱ.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1. 투자법 개요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3. 투자 인센티브
4. 각 주별 투자유치

Ⅱ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1. 투자법 개요

○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과 같은 투자법령이 없으며, 외국 기업은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

○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이 깊은 남아공 내 법령은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Law), 노동법(Labour Law),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회사법(Company Act) 등이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형태에 따라 Company Act와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

- 구성원이 최대 1명인 Close Corp 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써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사진관,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

○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Company Act의 적용

-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Local Company로 등록하는 방안
- Local Company는 다시 Public Company와 Private Company로 구분
- 회사설립은 Register of Companies에 등록함으로써 설립

○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는 정부가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로 가능

- 다만, BEE 육성정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BEE 기업 및 현지 관련 협회와 어떠한 형태로든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

○ 남아공에 투자하는 기업은 모두 독립 회계법인을 회계 감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 내에 현지 회사(Locally incorporated Company)가 아닌 지점 형태의 회사(External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에 따라 지점 설립 후 21일 이내에 등록

○ 이러한 조항은 공기업 및 사기업 모두에게 적용, 만약 수출입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다면 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 고용창출 규모가 큰 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기술기반이 부족한 IT 산업의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

○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여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가 가능

○ 은행과 방송분야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
-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ar of Deposit Taking Institution의 승인 필요
- 49%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 필요
- 방송 분야의 외국인 지분소유는 20%로 제한

3. 투자 인센티브

○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아래 5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 광범위 투자(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 흑인경제활성화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기술혁신(Innovation and Technology)
- 수출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s)

○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 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

○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

○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

○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

○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

4. 각 주별 투자유치[4)]

○ 남아공의 9 개 주 정부에서는 지역별 독특한 특색을 바탕으로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

4) 자료출처 : 주한 남아공 대사관

(1) 노던케이프 (Northern Cape)

- 노던케이프는 남아공 9개 주 중 면적이 가장 크며 국토의 30%를 차지
- 남아공의 네 개의 다른 주뿐 아니라 대서양과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접경
- 노던케이프주 남쪽을 흐르는 오렌지 강은 건실한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 주정부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 광업, 광물가공
    - 호타젤 훼로망간 제련소
    - 해양업, 다이아몬드 채광
  - 농업, 농산품가공
    - 4천 톤의 건포도 생산을 위한 SAD 합작투자
    - 올리브 &올리브오일

- 인프라
  - 피울스드리프트(Vioolsdrift)- 저수용 댐
  - 농업개발지원을 위한 대량 서비스 인프라

(2) 노스웨스트 (North West)

○ 노스웨스트주는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경제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하우텡에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

○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준의 관광업 및 농업이 발달

○ BMW, 삼성, 네슬레, 하인츠, 화이어스톤 타이어, 보쉬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위치

○ 투자진흥기관인 노스웨스트투자청은 인센티브 혜택, 비자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3) 림포포(limpopo)

○ 림포포주는 광업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주 경제의 20%를 차지

○ 가장 비옥한 농지를 소유한 곳으로, 다양한 아열대 과일 및 견과류 재배 등 농업부문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 광업
  -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플래티넘계 금속, 크롬, 바나듐을 비롯하여 상당한 매장량의 구리, 니켈, 철광석, 티타늄이 지역 중심에서 생산
- 농업
  - 농업은 매력적인 투자분야로 피터즈버그 국제공항을 통한 직접수출의 가능

- 관광
  - 지역 내 야생동물농장에 대한 수요증가.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과 농업 활동이 접목된 분야로 투자수익이 증가
- 제조업
  - 제조업과 관련한 투자기회는 구체적으로 제혁업, 과일, 야채 및 육류 가공, 벽돌, 보석 및 가구제조, 산업용 화학물질, 경공업 분야
  - 림포포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회사들로는 사만코르(Samancor, 실리콘 용해), 에스콤(Eskom, 전력발전), 그라노르 파시(Granor Passi, 과일쥬스), 보난자 (Bonanza, 가구제조), 칸힘(Kanhym, 육류가공) 등

(4)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 수입관세의 인하와 지역 중공업의 기반이 되는 살다나 제철(Saldanha Steel)의 설립으로 산업기반 마련

○ 웨스턴케이프는 개방 경제 체제로 해외무역이 이 지역 총생산의 30%에 육박

○ 과일, 생선, 야채와 같은 1차 산업 상품들이 전통적으로 웨스턴케이프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공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 진흥청(WESGRO)은 주요 개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국제회의 관광
- 생태관광
- 영화제작 / 산업
- 선박수리, 컨테이너 선적, 오일 / 가스 굴착
- 정밀공학

- 선박건조
- 농산물 가공

(5) 음푸말랑가 (Mpumalanga)

○ 남아공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모잠비크, 스와질랜드와 국경을 접하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 유지

○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우수 교육 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노동력이 풍부

○ 드라켄스버그 산맥을 통한 관광지로 유명

○ 음푸말랑가투자이니셔티브는 음푸말랑가 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무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잠재적 투자가들의 원활한 지역 이전 등을 주로 지원

○ 넬스프루잇에 본사를 두고, 위트뱅크와 요하네스버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잠재적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철강 &스텐레스스틸
- 목재가공
- 관광업

(6) 이스턴케이프 (Eastern Cape)

○ 이스턴케이프는 항공, 도로, 철도망 등의 접근이 용이

○ 120개 대규모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생산의 25% 이상을 수출

○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 (EC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 기관으로 기업 및 투자가 개발 및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자동차 산업
- 전자 및 IT
- 광물, 금속, 엔지니어링
- 제약
- 플라스틱
- 관광
  - 공원, 박물관, 공예품 시장,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리조트
- 임업 및 목제품, 가구

(7)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 콰줄루나탈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잘 발달된 인프라 구축되어 있음

○ 콰줄루나탈의 경제 활동은 주로 더반을 중심으로 한 에디크위니 메트로폴과 피터마리츠버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리차드베이와 엠팡게니 지역·레이디스미스와 에자케니 지역·뉴캐슬와 마다데니 지역·콰줄루나탈 남부 해안 지역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분야 (8개 핵심 분야)

- 섬유, 의복
- 화학, 플라스틱제품
- 조립금속제품
- 자동차부품
- 목재 및 목제품
- 신발류
- 기계류 및 가전제품
- 일차 및 가공 알루미늄

(8) 프리스테이츠 (Free State)

○ 아홉 개 주 중 세 번째로 면적이 큰 프리스테이트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주 수도는 남아공의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임

○ 프리스테이트주는 세계 최대의 금광 매장량 및 연간 10만 톤의 야채와 4만 톤의 과일이 이곳에서 생산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 금보석 / 가공
- 화초 원예
- 제약업 (R&D)

(9) 하우텡 (Gauteng)

○ 남아공의 금융 중심지

○ 남아공 GDP의 38%, 재정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9%를 생산

○ 하우텡경제개발청(GEDA)은 지역 내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며 국내외 투자가 지원・해외홍보 및 투자 수출 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초청하며 유럽 기계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입찰 참여 기회를 현지 산업계에 제공

○ 하우텡관광청(GTA)은 '블루 IQ' 로 불리는 자체 특구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

○ 이는 혁신주도형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분야에 초점

Ⅲ. 세제 및 세정동향

1. 개요
2. 개인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CGT))
6. 특소세(Excise Duty)
7. 상속세(Estate Duty)
8. 비실명증권세(Uncertificated Securities Tax)
9. 기술발전부담금(Skill Development Levy(SDL))
10. 퇴직기금세(Retirement Funds Tax(RFT))
11. 로열티(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 Royalties)
12. 기타

Ⅲ 세제 및 세정동향

1. 개요

○ 남아공 국세청은 1997년 제정된「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 34」에 근거하여 조세징수(Revenue Collection) 및 세관업무(Faciliate Trade/ Customs)를 동시에 전담하고 있음

○ SARS는 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남아공의 조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1997년 이전에는 각 세목별로 징수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나, 1997년 이후에는 남아공 국세청에서 통합하여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청 및 전국 9개주에 45개 세무서 및 46개 세관으로 조직되어 있음

○ 전체 세무공무원 수는 약 14,738명(2010.3월 기준)이며 이중 50.66%가 흑인임

○ 남아공 국세청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 채용·조직 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예산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The National Treasury(재정경제부)에 보고서를 제출함
- 세법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세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The National Treasury가 맡고 있어 상호 업무분야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음

○ 국세청 담당 세수는 전체 GDP에서 평균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남아공 GDP 대비 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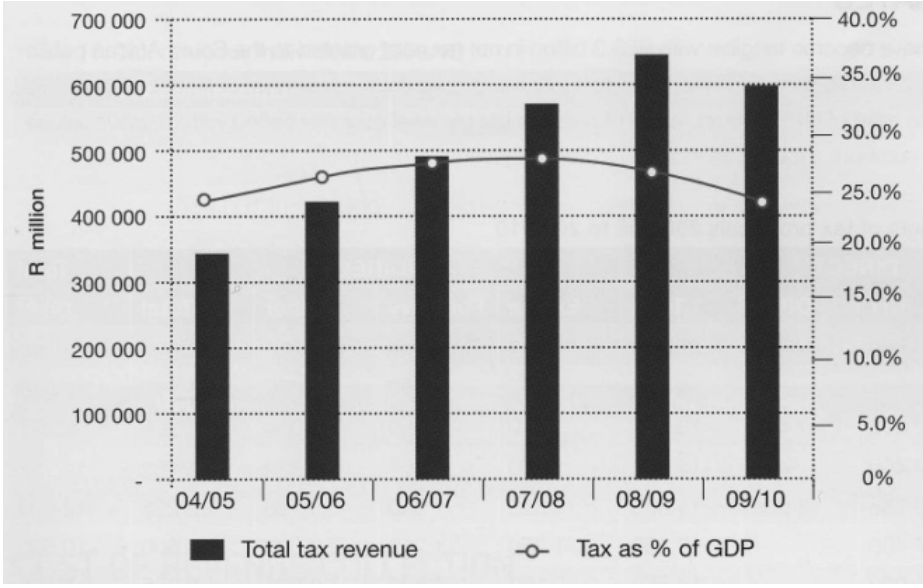

* 자료출처 :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 세목별로는 소득세 34.5%, 부가세 24.7%, 법인세 22.9%, 연료부담금 (Fuel levy) 4.8%, 관세 3.3%, 기타 9.9%임(2009년 GDP 대비 기준임)

[남아공 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 %)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소득세	28.5	29.6	31.4	34.5
법인세	24.2	24.7	26.7	22.9
부가세	27.1	26.3	24.7	24.7
연료부담금	4.4	4.1	4.0	4.8
관세	4.8	4.6	3.6	3.3
기타	10.9	10.7	9.6	9.9

* 자료출처 :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 등록된 납세자는 전체 890만명 정도이며 이중 개인납세자(62%) 및 법인사업자(21%)가 전체 83%의 큰 비중을 차지함

[남아공 등록된 납세자 현황]

	Individuals	Companies	Trusts	PAYE	VAT
2008/09	5,540,646 (6.5%)	1,834,009 (15.8%)	392,260 (2.0%)	393,974 (3.8%)	737,885 (−1.0%)
2007/08	5,204,805 (9.3%)	1,584,002 (30.0%)	384,747 (2.8%)	379,675 (8.8%)	745,487 (10.1%)
2006/07	4,764,105 (6.4%)	1,218,905 (15.5%)	374,411 (8.6%)	349,077 (5.7%)	677,153 (6.9)

* 자료출처 :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 ( )는 전년대비 증가비율을 나타냄
* 개인 중 R60,000 이하 개인소득자는 제외됨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남아공은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5)]

2. 개인 소득세

○ 남아공은 2001.1.1 이후 원천지국과세원칙에서 거주지국과세원칙으로 변경하여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됨

○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과세되나 근로자가 해외에서 12개월 중 183일

5)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 1996년 1월 7일 발효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12개월 중 계속해서 60일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비과세됨(단, 공무원 및 공사직원은 제외)

- 이때,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받은 금액 및 국외 수령 연금은 국외소득으로 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 일반적으로 남아공에 거주[6]하는 사람(국민) – 당해 과세연도에 91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직전 과세연도 5년간 한 과세기간에 91일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 직전 과세연도 5년간 총 거주기간이 915일 이상이 되는 사람	– 내국인일지라도 330일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조약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경우
봉급, 부가혜택(ex. 주택제공, 차량제공 등과 같은 비화폐성 대가), 특별수당(보상성격의 수당제외), 초과근무수당, 주식매수선택권, 연금, 보너스, 퇴직금, 거래제한지불금, 수수료 수익, 임원 급여, 인센티브 등	이자 및 배당소득(국외포함), 국외소득(투자소득 및 자본이득소득 포함), 자본이익 및 손실세(CGT), 사업, 무역 그리고 전문직(임대업 포함) 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ex. 로얄티) 등

○ 과세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소득 공제

- 의료비 지급액(단, 65세 이상인 경우 한도 없음)
- 퇴직연금기금(Current retirement annuity fund contributions)

6) 거주일수 판단시 입국일, 출국일 모두 포함

- 종업원을 위한 접대비
- 사업과 관련 있는 출장비 및 교통 수당
-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과세대상소득의 10%까지 한도로 함)

[소득공제]

소득공제	내 용
의료비	– 본인이 65세 미만의 경우 의료비 지급액 중 공제액은 과세소득의 7.5% 한도 –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한도없음
퇴직소득보호기금[7]	과세가능 소득(자본적지출, 기부금, 퇴직연금기부금, 의료비, 치과치료비, 토양침식관련 지출 제외)의 15% 와 R 1,800 중 작은 금액
출장비 및 교통수당	연료비, 유지비 및 수리비, 보험료 및 면허세, 손상차손(R400,00 한도) 등
기타공제	외국납부세액, 기타 기부금, 평가차손, 자택근무비용 등

○ 소득세 세율[8]

- 남아공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은 40%
- 과세대상 소득이 R132,000 이하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R525,000 초과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이 부과
-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54,200 미만, 65세 이상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84,200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

7) Retirement and income protection contributions

8) 2009/2010 회계연도 기준, SARS

[남아공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R 132,000 이하	18%
R 132,000 초과 R 210,000 이하	R 23,760 +25% of R 132,000 초과분
R 210,000 초과 R 290,000 이하	R 43,260 +30% of R 210,000 초과분
R 290,000 초과 R 410,000 이하	R 67,260 +35% of R 290,000 초과분
R 410,000 초과 R 525,000 이하	R 109,260 +38% of R 410,000 초과분
R 525,000 초과	R 152,960 +40% of R 525,000 초과분

○ 표준 근로소득세(SITE[9])

- 연간 순급여액이 R12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출장비(travelling allowance)를 받지 않는 개인 또는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개인에게 완납적 원천징수 성격으로 납부
- 표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타 소득이 있거나 기타 공제 신청[10]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PAYE[11])

-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임시 세액 납부 제도(Provisional tax payments[12])

- 근로소득세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임시 소득세 납부
- 과세기간 중 6개월 간격으로 납부

9) Standard income tax on employees(SITE)

10) ①퇴직연금 공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②의료비 지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③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④이전 과세기간의 평가손실(assessed losses)

11) Pay-As-You-Earn

12) 우리나라 소득세 중간예납과 유사함

○ 신고기한

- 신고기한은 매년 국세청이 지정하여 공포
-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원천징수세액, 표준 근로소득세, 임시 소득세 납부액은 공제한 후 소득세 신고하며 세무당국은 과세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통지
- 개인납세자로서 등록의무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

	등록의무	신고서 제출의무
R 60,000 이하	X	X
R 60,000 초과 R 120,000 이하	O	O(조건하 X[13])
R 120,000 초과	O	O

- 매달 수입이 R5천 이하이거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SITE로 완납됨. 그러나 의료비나 기부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등록 후 신고를 하여야 함

3. 법인세

○ 남아공의 법인세율은 28%이며, 연간 매출액이 R14백만 이하의 기업(Small Business Corporations, SBC)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 및 감가상각 적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R54,200 이하인 경우 0% 세율을 적용하고, R54,000 초과 R300,000 이하는 10%, R30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13) 한명의 개인고용주로부터 과세연도(3월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동안 R120,000 이하의 보수를 받을 것(출장비와 같은 감면이 적용되는 수당이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

남아공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법인세 부과

[남아공 법인세 세율[14)]]

(기간: 2009.4.1~2010.3.30)

유 형	세 율
Companies	28%
Small business corporations[15)]	초과누진세율
R 0 ~ 54,200	0%
R 54,201 ~ 300,000	10%
R 300,001 ~	28%
Personal Service provider companies, Employment companies	33%
외국법인[16)]	33%

○ 사업연도

-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총수익 - 공제 가능 비용 - 비과세 + 자본이득 - 이월결손금

○ 감가상각비

-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나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4) 자료원 : SARS 2009.10.07

15) Small business corporations는 매출액이 R14백만인 법인임

16) Foreign resdient companies which earn income from a source in South Africa

[감가상각 방법]

관련 업종	상 각 률
일반적인 경우	정액법을 적용
제조업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의 경우 첫 과세기간에 40%, 그 후 3 과세기간동안 20%씩 상각 가능
농업	첫 과세기간에 50%, 2 과세기간에 30%, 3 과세기간에 20% 상각 가능
관광업	호텔의 경우 5년간 20%씩 상각 가능

-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첫 사업연도에 40%, 다음 3기 사업연도 간 20%씩 상각처리[17)]
- 농업 관련 기계류(바이오연료 관련 기계류 포함)은 첫 사업연도에 50%, 2기 사업연도 30%, 3기 사업연도 20% 상각처리
- 신축건물은 2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종업원을 위한 기숙시설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10%, 매 사업연도에 5%를 감가상각처리
- 계획 지역(designated area) 내 재건축 건물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계획 도시개발지역(designated urban development zone) 내 상업용, 주거용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20%, 나머지 16 사업연도 기간동안 매 5%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SBC(Small Business Companies)는 사업과 관련(광산업과 농업의 경우 제외)하여 사용되는 플랜트, 기계류는 사용 첫회에 전액 감모손실 인식이 가능하며, 기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사용 첫회에 50%, 둘째 회에 30%, 셋째 회에 20%의 가속상각이 가능함

17) 단기 평가손실 적용가능

○ 연구개발비(R&D)

- 연구개발 관련 경비는 연구개발과 관련 직접 경비의 150%까지 인정
- 연구개발활동은 남아공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사용 등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됨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건물, 기계류, 장비 등은 50%, 30%, 20%로 가속상각방법에 의해 감가상각처리

○ 결손금

- 결손금은 향후 발생할 수입금액에서 차감가능하며, 소급처리는 인정되지 않음

○ 배당세(STC)[18]

- 배당세(STC)는 2차 법인세로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Company Income Tax)가 부과된 후, 법인 배당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어 "2차 법인세 또는 법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로 불림. 이는 법인의 이익금이 과도하게 주주 배당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내 유보금으로 남아 법인 기술연구 및 설비 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TC를 부과하고 있음
- 세율 10%[19]
- 신고한 배당보다 초과하여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연도 지급될 배당금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함
- 외국법인의 경우 남아공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33% 세율을 적용하고, STC는 부과되지 않음
- 일반 광산업에서 발생한 수익도 일반법인과 같이 28%세율과 STC가 적용되나, 금광 채굴 산업의 경우에는 STC의 면제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금광채굴과 관련된 소득은 다른 광물 채굴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8) A secondary tax on companies

19) 과거 12.5%이었으나 2007.1.1부터 10%로 인하함

STC 면제되는 경우	STC 면제되지 않는 경우
Y=34−(170/X) (다른 소득은 28% 세율을 적용함)	Y=43−(215/X) (다른 소득은 35% 세율을 적용함)

* X = 금 채굴업에서 발생한 총수입 중 금 채굴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 비율
* Y = 부과 세율

○ 임시 세액 납부 제도(Provisional tax payment)
- 완납적 개념이 아닌 예납적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예납과 유사함
- 법인은 일반적으로 2회에 나눠서 납부하며, 법인 선택에 의하여 3회 납부가능함
- 2회 납부방식 :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월이 되는 날과 그 다음 사업연도 6월이 되는 날
- 3회 납부방식 : R2만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3회 임시 세액 납부가 가능하며,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월이 되는 날과 해당 년 말일, 그 다음 사업연도 6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미이행시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됨(topping-up제도)

○ 원천징수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10%세율의 원천징수[20)]
- 비거주자가 남아공 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를 통한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12%세율의 원천징수[21)]
-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율[22)]

20) 2009년 이전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원천징수함

21)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경우 감액 또는 면제됨

22) 자료원 :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협약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Korea	5/15	10	10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서 제출

○ 기타

- 광산업을 운영하는 납세의무자는 채굴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광산업을 운영하는 납세의무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채굴기간동안에 원상복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고, 충당금 설정액은 비용으로 공제가능함

4.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 재화와 서비스 제공 및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봉급, 임금, 취미생활 또는 개인적인 여가생활, 일시적인 판매, 면세 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 1년 동안의 매출(영세율 포함)이 R1,000,000[23]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매출이 R50,000～R1,000,000인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24]임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1일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23) 금액 2009년 기준,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24)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 세율

- 14% 표준세율 및 영세율
- 전단계세액공제제도 채택
-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VAT number와 tax invoice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5년간 모든 tax invoice와 거래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 14% 표준세율 적용 예

- 토지 및 건물(건설업자가 구매하는 상업용 거주용 자산, 건설 재료, 나대지 등)
- 전문직종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재(식료품 및 잡화, 식품, 식량, 담배, 약 등)
- 내구소모품(자동차, 텔레비전 등)
- 市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전기, 수도, 쓰레기제거 등)
- 편의시설, 접객업, 여행업, 유흥업에서 공급하는 용역
- 고정자산(가구, 기계류 등)
- 상품의 운반 및 해외 수송업
- 전화,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기타 통신서비스
- 상품 및 상업 자산의 렌탈
- 차량, 수리 용역, 윤활류 및 예비부품

○ 영세율 대상

- 승객과 재화의 국제이동의 경우
- 보험료와 보험료 관련 서비스
- 재화의 수출
- 등록된 사업자(vendor)에 대한 판매
- 생활 필수 식품 및 식량(우유, 쌀, 달걀 등)
- 원유 및 몇몇 휘발류, 디젤 상품
- 사업의 양도
- 농업, 목축업으로 사용되는 상품(비료, 씨앗(종자), 동물치료제 등)

- 수리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
- 수출품
- 해외운송업
- 해외에서 공급되는 용역
- 해외 자산에 공급되는 용역
-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

○ 부가세 면세
- 금융서비스(ex. 생명보험 및 신탁이자, 의료·연금기금이자 등)
-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는 기부되는 상품 및 서비스
- 거주목적 편의시설 공급(전세 및 전전세)
- 여객운송업(택시, 버스, 기차 등)
- 승인된 교육시설에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탁아소(유아방) 및 방과후 교실)

5.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CGT))

○ 자본이익세는 자산 처분시 자산의 처분가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처분이익)과 유사한 개념임

○ 자산의 처분은 매매, 증여, 교환, 사망, 이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자본이익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소득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본 세율
- 개인인 경우 순자본이익에서 매년 R12,00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함
- 법인인 경우 순자본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29% 법인세율을 적용함

○ 유효 세율(Effective rate of tax)

- 일반 세율 대신 연간 기본공제액(이월된 순자본손실을 포함함)을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본이익에 일반세율보다 낮은 유효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개인 : 40% × 25%(기본세율) = 10%
- 법인 : 50% × 28%(기본세율) = 14%

○ 순자본손실(Capital losses)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순자본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이월하여 순자본이익에서 공제가능함

○ 적용 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이익세 적용을 배제함
  ⅰ. 개인의 경우 처분한 자산의 처분이익이 R1,500,000 이하
  ⅱ. 사업용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25)]
  ⅲ. 퇴직으로 인한 수혜품
  ⅳ. 당초 보험 계약자로서 장기 보험 정책에 의해 받는 보험금
  ⅴ.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R120,000까지 배제됨

○ 비거주자의 자본이익세

- 남아공내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이익, 권리
- 회사 자산 중 80%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 권리
- 회사 자산 중 80%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기득권

25) 자동차, 가구, 장식용 보석류, 주거용 이동 차량(caravans) 등 대부분의 개인이 보유하고 있은 것은 배제함

6. 특소세(Excise Duty)

○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부과

○ 종량세 : 담배, 술
종가세 : 화장품, 텔레비전, 오디오 장비, 자동차

○ 감면제도 : 수출시, 농업, 임업 및 일부 생산활동의 경우 가능

7. 상속세(Estate Duty)

○ 유산은 화재보험, 연금 등을 포함하며 사망자의 모든 재산(국내외)을 의미함

○ 비거주가가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만 과세대상으로 함

○ 20%의 세율이 적용

8. 비실명증권세(Uncertificated Securities Tax)

○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증권에 대한 발행과 교환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0.25% 비율로 부과

○ 1998년도에 제정되었던 비실명증권세는 2007년 증권 이전세(The Securities Transfer Act, 2007)에 의해 대체

9. 기술발전부담금(Skill Development Levy(SDL))

○ 교육 및 훈련 기금을 위한 강제적인 형태의 추가 부담금으로 임금의 1%를 납부하여야 함

○ 2005년 7월 31일까지 연 임금지불액이 R250,000 초과하는 고용주만 납부하였으나, 2005년 8월 1일부터는 R500,000로 상향 조정됨

10. 퇴직기금세(Retirement Funds Tax(RFT))

○ 퇴직기금으로부터 받는 해외배당소득, 임대소득, 총이자 등에 부과됨

11. 로열티(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 Royalties)

○ 자원석유광물로열티는 엄격하게 세금은 아니며,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 개발에 따른 영구적 자원고갈(permanent loss of non-renewable commodities)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 자원석유광물로열티는 채굴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지급되거나 광산 관련 지자체에 교부금 성격으로 지급됨

○ 로열티[26)]

26)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

광물 종류	로열티
귀금속과 우라늄	Y=15-9/X 또는 Y=15-12/X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Y=10-12/X
기초금속	생산액의 10%

* Y : 로열티 비율
* X : 매출액 중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 사유지에서 개발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없으나, 광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는 로열티를 기초로 하여 협의 후 결정함

12. 기타

○ 남아공 국세청은 최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규모별로 세분화된 세액 산출 구조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세청 조직도 업종별로 세분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남아공 시장 진출시 관련 분야 세법 개정여부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각종 신고 업무는 e-filing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신고만 허용하고 있음

- e-filing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홈택스(hometax)와 같은 시스템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1년간 개인소득세(270만),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750만)를 통해 1천만 건 이상의 신고서가 e-filing을 통해 접수됨
- 현재 우리나라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수동신고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남아공의 경우 일체 수동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남아공 세무서 및 세관 운영 현황

주(州)	세무서 개수	세무서명	세관개수		
			항구	공항	국경 지역
Eastern Cape	4	• East London Revenue • Mthathe Revenue • Port Elizabeth Revenue • Uitenhage Revenue	3	1	1
Free State	3	• Bloemfortein • Kroonstad • Welkom	1	1	4
Ganteng	15	• Alberton • Benoni • Boksburg • Germiston • Johannesburg • Krugersdorp • Nigel • Pretoria-Ashley Gardens • Pretoria CBD • Randburg • Randfontein • Roodepoort • Soweto • Springs • Vereeniging	4	2	
KwaZulu-Natal	6	• Durban • MtEdgecombe • Pietormaritzburg • Pinetown • Richards Bay • Umlazi	3		
Limpopo	4	• Giyani • Lebowakgomo • Polokwane • Sibasa		1	1
Mpumalanga	3	• Nelspruit • Standerton • Whtbank		1	6
North-West	3	• Klerksdorp • Mmabatho • Rustenburg	1	1	3
Northern Cape	1	• Kimberley	2		2
Western Cape	6	• Paarl Revenue • Beanfort West Revenue • Bellville Revenue • Capetown • Revenue • George Revenue • Worcester Revenue	7	1	

붙임. 한·남 조세협약

[1996.01.07]

1995년 7월 7일 서명
1996년 1월 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촉진과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적용범위】[1996.01.0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1996.01.07]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개발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1) 보통세
   (2) 비거주자 주주세
   (3) 제2차기업세 (이하 "남아공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996.01.07}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남아공"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남아공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없 소유 소우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1996.01.07}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1996.01.07}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996.01.07}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콘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 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배당】{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996.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나. 양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다. 자본 중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어느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도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의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1996.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1996.01.07}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996.01.07}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에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1996.01.0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996.01.07}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996.01.07}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정부용역】{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1996.01.07]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21조【교수 및 연구자】[1996.01.07]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소득】{1996.01.07}

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996.01.07}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무차별】{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1996.01.07}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1996.01.07}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1996.01.0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저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1996.01.07}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째 또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종료】{1996.01.07}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이후 5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등을 2010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행 정 사 무 관 장일현

세 무 조 사 관 정규명

서울청 : 세 무 조 사 관 박지상 (02-2076-5028)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제작 : (주) 아트팰리스 T. (02)2277-1088